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7년 04월 20일 까지 신고 바랍니다.
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.

(사북읍 주민센터 담당자 : 이 미숙 문의전화 : 033-592-3002)

세대주 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이**	이** 1966-08-04	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	무단전출
이**	유** 1995-02-08	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	무단전출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2017년 04월 12일

사북읍장 인

